

롯데푸드 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푸드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나 필요시 이사회에서 선정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
- ② 기타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